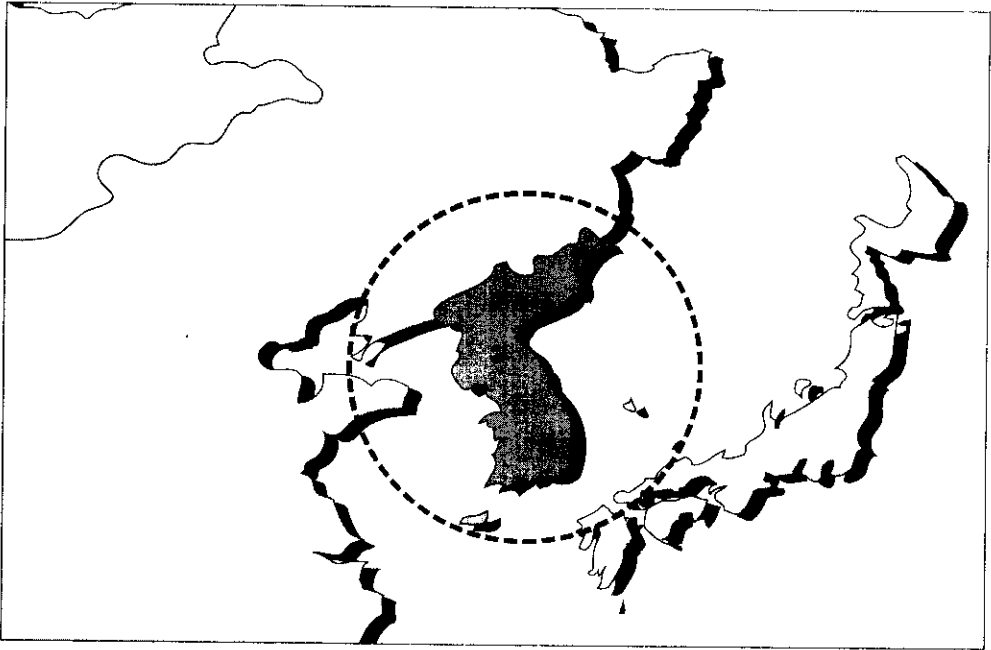


논 단



64. 북한 경제의 회복을 위한 대금 결제 상의 새로운 노력

윤기관 / 충남대학교 교수

80. 在 러시아 북한 노동자 활용 방안: 실질적인 남북 경험의 출발점

김종일 / 모스크바대학교 인구-노동문제연구소

북한 경제의 회복을 위한 대금 결제 상의 새로운 노력

윤기관 / 충남대학교 교수

지난 10년간 남북한 교역 경험에서 드러난 남북한 교역 확대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대금 결제 면에서의 한계를 지적하면, ① 바터 거래(물물 교환)에서 상호 결제 가능한 적합한 물품 선정의 다양성이 부족하며, ② 남한 물품과 교환되는 북한 물품 가격 산정이 어려우며, 대금 결제와 직접 관련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품질 문제와 그에 따른 클레임 처리가 매우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하여 북한 경제의 회복을 위해 요구되는 민족적 차원에서의 효율적인 대금 결제 방식을 모색해보면, ① 간접 교역에서 직접 교역으로 전환, ② 내국간 거래 인정 범위의 확대, ③ 바터 거래 방식의 효율적 활용과 개선, ④ 대응 구매 방식의 활용, ⑤ 신용장 결제 방식의 활용, ⑥ 청산 계정의 활용, ⑦ 구 동서독의 스윙제도의 활용, ⑧ 무환 수위탁 가공 무역의 활용, ⑨ 제품 환매 거래의 활용, ⑩ 중장기연불제도의 활용이 있다.

머리말

O T 리는 지난 8월 15일 제52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90년대의 남북 관계에 대한 회고와 평가를 긍정적·실질적으로 진전이 있었음을 자평한 바 있다.

우선, 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히 하는 기초 위에서 남북 관계를 보다 더 개선시키고

한(배달)민족의 공동 번영을 추구하기 위하여 첫째, 평화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민족공동체통일 방안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재확인하고 둘째, 북한의 핵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기 위하여 대북 경수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다짐하고 셋째,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4측회담을 개최하며 그리고 넷째, 북한 동포의 식량난을

덜어주기 위하여 대북 식량 지원을 전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꾸준히 추진해오며 따라 전반적으로 볼 때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자평하였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 2,300억 원 상당의 식량을 제공하였으며,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북 경수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한반도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4者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한반도 평화와 남북 협력을 위한 각각 네 가지씩의 방향을 천명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4者회담을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간 협력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규정함으로써, 장기적 구도 하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간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한 바 있다.

이 가운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네 가지 방향이란 무력 포기(북한의 내남 무력 남침 및 적화 노선의 완전 포기 추구), 상호 존중(상호 실체 존중과 진솔한 대화의 중요성 강조), 신뢰 구축(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 강조와 남북 관계의 새로운 상황에 부합하는 합의의 필요성 제기) 및 상호 협력(북한의 실질적인 도움국은 남한임)이다.

그리고 남북 협력을 위한 네 가지 방향이란 북한의 식량난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 남북 대화를 통한 '민족발전

공동계획' 추진, 북한의 국제 사회 참여 지원 및 북한 당국의 변화와 개혁 추구이다.

또한 우리는 평화를 확고히 하는 바탕 위에서 나라의 힘을 강화시킴으로써 통일 국가와 일류 국가를 건설하며, 나아가 통일 조국 건설의 달성을 광복의 완성으로 정의함으로써 통일을 위한 장단기적 대비를 구체화해나갈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이상과 같은 세 가지 커다란 자평 가운데서도 특히 대북 지원 및 남북 협력에 관한 기본 철학을 천명한 남북 협력을 위한 4대 방향에서, 우리는 북한의 식량난은 일시적인 지원으로는 그 근원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자가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더 나아가 북한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남북한 모두가 함께 번영하기 위한 '민족발전공동계획'을 협의·추진하기 위하여 조건없는 남북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식량난은 어떻게 해야 해결될 수 있으며, 북한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야 타개될 수 있을까? 즉, 남북 대화가 실질적으로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우리의 대북한 경제 교류와 협력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묘안은 무엇일까?

이와 같은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논자는 1988년부터 시작된

남북한의 경제 교류(물자 반출입)에서 나타난 바 있는 교역 대금 결제 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남한측과 북한측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켜줄 수 있는 몇가지의 효율적인 대금 결제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것은 곧 북한 경제의 회복을 위한 우리의 민족적 차원에서의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 교역과 대금 결제 상의 한계

남북한 교역 동향 분석

○ 남북한 교역 승인액 현황 분석

남북한 교역 승인액을 연도별로 분석해보면, 1988년에 최초로 약 100만 달러 어치의 반입 승인이 이루어졌다. 교역액이 1989년

에 이어 1990년에 들어서는 2,000만 달러를 약간 초과하더니, 1991년부터는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는 2억~3억 달러 정도에 이르고 있다. 물론, 반출보다는 반입 위주의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표 1〉 참조).

○ 남북한 교역 통관액 현황 분석

남북한 교역이 실제로 성사된 것을 나타내는 통관액을 연도별로 분석해보면, 1989년과 1990년에는 2,000만 달러 이하에 불과하던 것이 그 후 급증하여 현재는 2.5억~2.8억 달러 정도에 이르고 있다. 물론, 반출보다는 반입 위주의 교역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표 2〉 참조).

〈표 1〉 남북한 교역 승인액 현황(1988. 10~1997. 7)

(단위: 천 달러)

연도	반입	반출	합계
1988	1,037	-	1,037
1989	22,235	69	22,304
1990	20,354	4,731	25,085
1991	165,996	26,176	192,172
1992	200,685	12,818	213,503
1993	188,528	10,262	198,790
1994	203,521	25,423	228,944
1995	236,075	73,751	309,826
1996	181,386	61,677	243,063
합계	1,219,817	214,907	1,434,724
1997(1~7월)	116,405	65,617	182,022

자료: 통일원,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표 2〉 남북한 교역 통관액 현황(1988. 10~1996)

(단위: 천 달러)

연도	반입	반출	합계
1989	18,655	69	18,724
1990	12,278	1,187	13,465
1991	105,722	5,547	111,269
1992	162,863	10,563	173,426
1993	178,166	8,425	186,591
1994	176,298	18,248	194,546
1995	222,855	64,435	287,290
1996	182,399	69,638	252,037
합계	1,059,236	178,112	1,237,348

자료: 통일원,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 남북한 위탁 가공 교역 승인액 현황 분석

남북한 위탁 가공 교역의 내용은 전적으로 남한의 가공 위탁이요 북한의 가공 수탁의 성격을 띠고 있다. 남북한 교역이 이루어졌던 최초 2~3 년간에는 위탁 가공 교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1991년부터 소규모(반출 1만 3,000 달러, 반입 2만 3,000 달러, 합계 3만 6,000 달러)로 시작되었다. 그 후 1992년(96만 9,000 달러), 1993년(799만 6,000 달러), 1994년(2,856만 4,000 달러), 1995년(4,723만 7,000 달러), 그리고 1996년(6,032만 8,000 달러)으로 갈수록 남북한간의 위탁 가공 교역이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위탁 가공 교역의 급증 추세는 남북한 교역의 승인액 및 통관액의 감소 추세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남북한 교역이 3억 달러를 넘어서지 못하고 답

보 내지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은 역시 대금 결제 상에 있어서의 한계점에 직면하게 되었기 때문이며, 한편 남북한 위탁 가공 교역이 급증 추세를 보이는 것은 남북한 각각의 필요와 요구가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본다(〈표 3〉 참조).

남북한 교역에 있어서의 대금 결제 상의 한계

지난 10여 년간의 남북한 교역 경험에서 드러난 남북한 교역 확대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대금 결제 면에서의 한계를 지적하면 첫째, 바터 거래(물물 교환)에서 상호 결제 가능한 적합한 물품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다양성이 부족하며 둘째, 남한 물품과 교환되는 북한 물품 가격 산정이 어려우며 셋째, 대금 결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품질 문제와 그에 따른 클레임 처리가 매우 불

<표 3> 남북한 위탁 가공 교역 승인액 현황(1988. 10~1997. 7)

(단위: 천 달러)

연도	반입	반출	합계
1988	-	-	-
1989	-	-	-
1990	-	-	-
1991	23	13	36
1992	556	413	969
1993	4,385	3,611	7,996
1994	16,598	11,966	28,564
1995	26,490	20,747	47,237
1996	29,486	30,842	60,328
합 계	77,538	67,592	145,129
1997(1~7월)	21,376	25,663	47,039

자료: 통일원,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확실하다는 것들이다.

북한은 특히 현재 외화가 극도로 부족한 상태여서 무역 대금 결제에 있어서 신용장 방식이나 현금 결제 방식을 기피하고 주로 無換 구상 무역으로서의 바터 거래를 선호하고 있다. 그런데 有換 구상 무역이든 無換 구상 무역이든 구상 무역의 원래 목적은 교역 당사국간의 무역 균형 유지와 외화 부족의 대안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구상 무역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국제수지(구체적으로는 무역수지) 불균형의 해소와 무역 증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구상 무역의 원래 목적의 하나인 무역 균형 유지에 따르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구상 무역이 과거 사회주의 제국에서 널리 이용돼온 것은 바로 사회주의권 제국들이 직면해왔던 외화 부족 현상 하에서

필요한 물자를 구매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용돼왔던 것이기 때문에, 구상 무역의 원래 목적의 또 하나인 외화 부족의 대안에 따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 교역에서도 북한의 현재 경제 사정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바터 거래 방식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무역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교역량과 교역 금액을 합의해야만 한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러한 사전적인 교역량과 교역 금액에 대한 합의는 곧바로 교역 규모의 확대에 절대적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사실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게다가 남북한간에는 상호 합치되는 대응 물품이 다양하지 못하며, 또한 대체적으로 북한은 1차 상품이 그리고 남한은 2차 상품이 공급 가능한 물품이 될 것인 바, 이에 따

른 수직적 교역은 양측의 경제 구조와 경제 사정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북한측이 꺼리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원자재는 원자재, 농산물은 농산물, 공산품은 공산품과의 교역 즉, 수평적 교역을 요구하고 있는 터라 그에 따른 대응 물품 선정에 대단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도 북한의 농·수·광산물의 반입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그 금액과 수량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별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남북한 교역이 활성화되면 국내의 사양 산업에 속하는 당해 업자들의 반발은 대단히 클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고 있다.

북한은 상품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동일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소들의 평균 노동 투입량(노동가치설에 근거한 사회적 필요 노동 시간)을 기초로 하여 생산성 향상, 원가 절감, 수요·공급 조절 수단으로서 인위적으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품 가격은 단지 계산을 위한 가격에 불과할 뿐이다. 즉, 북한의 상품 가격은 실제 상품 가치를 반영하는 가격이 아니며, 화폐는 단순한 교환을 위한 전표의 기능만 수행할 따름이다.

또한 북한은 중국, 러시아, 동구 제국 등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제품의 원가 개념이 희박하다. 즉, 제품의 가격은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여 국제 시장 가격에 비해서 매우 비싼 경우도 많고, 매우 싼 경우도 많다. 따라서 이러한 북한의 상

품과 남한의 상품이 바터 거래에 따라 상호 교환되어 결제될 때 당연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중개상을 경유할 경우 남한의 대북한 물품의 반입 가격은 국제 시세보다 높으며, 북한으로의 반출 가격은 국제 시세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더욱이 북한의 실제 반출입 가격과 중개상에게 지불되는 중개료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현실적으로는 1차 금속류의 경우는 국제 현물 시장 가격을 적용하고 있으나, 기타의 경우는 북한측 무역상사와 중개상간에 합의된 가격을 남한이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11 년간이나 의무 교육을 받고 있으며 명령체계에 익숙해져 노동 생산성이 높은 편이어서 노동 집약적 산업 분야의 제품은 그 품질이 우수하다고 하지만, 노동 집약제가 아닌 농·수·광산물의 1차 상품인 경우에는 거의 자연적인 품위에 의존하게 되는 바, 계약 상의 품위와 차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간접 교역에서 중개상은 클레임 조항을 계약서 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비록 클레임을 제3자에게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제3국 중개상과 계약 체결시 계약서 상에 “이 물품은 남한에 판매할 수 없다”는 조항을 명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클레임 조항을 삽입하더라도 형식적이

며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북한 경제 회복을 위한 남한의 민족적 정책

이와 같은 남북한 교역 상에서 나타난 대금 결제 상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북한 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요구되는 민족적 차원에서의 효율적인 대금 결제 방식을 모색해보면 다음과 같다.

간접 교역의 직접 교역으로의 전환

남북한이 직접 교역을 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간접 교역 상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현재는 북한의 무역상사와 직접 교역 협의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남북한 총리간에 이미 합의된 남북합의서와 그 부속서에서도 직접 교역을 하도록 합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이 공식적으로 남한과의 교역을 허용하고 이에 따라서 무역협정, 청산협정, 호혜통상협정 등을 체결하게 된다면, 간접 교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제약 요인들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남북한 교역은 활기를 띠 것으로 본다.

그런데 직접 교역은 교역 협의, 계약, 물품 이동은 직접 당사자간에 이루어지지만 대금 결제에 있어서는 바터 거래나 환거래 방식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그러나 북한에서

는 최근 일부에서 남한 상사와의 직접 교역 협의는 묵인하고 있으나, 계약은 제3국 상사나 서류 상의 회사로 해야 하고, 도착지도 제3국으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한 북한은 직접 교역의 경험이 적어 북한 상사의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손실 발생의 우려가 크다.

직접 교역을 시행하고자 할 때 직면하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우선은 북한의 요구대로 바터 거래 방식을 이용하고 대응 물품 개발 노력을 하며, 또한 남북한 경제교류협력협정의 체결을 통하여 상설 교역 협의 창구를 DMZ 내의 관문점에 설치하고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상호 보완적인 교역 확대를 시도해야 한다.

내국간 거래 인정 범위의 확대

남한의 현행법상 북한 물품을 남한으로 반입할 때 직접 교역의 경우와 단순한 제3국 경유의 경우만 수입 관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직접 교역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은 대부분이 중개상을 이용하는 간접 교역(중개 무역)이기 때문에, 단순한 제3국 경유는 성질상 직접 교역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현행 조치는 직접 교역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직접 교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간접 교역이 활성화되는

것이 필요하므로 간접 교역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는 의미에서, 잠정적으로 간접 교역의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을 제시하여 내국간 거래의 범위에 삽입시켜 관세 상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현행법상 북한 상품이란 '북한에서 생산되어 제3국 관세선을 통과하지 않은 물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제3국의 관세선을 통과하면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에 해당하여 간접 교역중 중계 무역으로 취급되어 관세 상의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러나 관세 실무상·행정상·철차상 북한 상품임을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롭고, 게다가 관세 상의 혜택을 악이용하여 중국 상품이 북한 상품으로 둔갑되어 국내로 반입되는 사례도 발생되고 있어서 실행상 어려운 점도 있다. 하지만, 간접 교역(중개 무역)이라도 남북한 교역이 활성화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인정할 때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조치임에 틀림이 없다.

또한 중개 무역과 직접 무역임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가 복잡하고 많기 때문에, 남북한 교역의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원산지가 북한임을 확인하는 방법으로서 북한에서 직접 운송된 사실을 입증하는 선화증권 등의 서류와 북한 조선대외상품검사위원회와 조선무역은행 등 북한에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발급된(한글이나 영어로 필수적 기재 사항이 표기된) 원산지 증명서 혹은 선화증권을 발행한 외국 선박이

북한을 입출항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선장 확인의 항해 일지 등의 서류에 근거하고 있다. 이것은 직접 운송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들이다.

한편, 제3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 장치가 이루어진 물품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북한에서 제3국까지 운송한 사실을 입증하는 선화증권(예: 북한에서 경유국, 경유국에서 남한으로의 운송 사실이 적혀있는 선화증권), 경유국의 세관이나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적화 목록 등 북한에서 선적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원산지를 북한으로 판정하는 기준은 완전히 북한에서 생산된 것과 원부자재를 제3국에서 수입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변형된 제품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요구 사항들이 남북한 교역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실제로 관세 면제 조치를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입수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관세 면제를 아예 포기하는 업체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또한 북한 발행 원산지증명서가 외견상 미흡하거나 하자가 있다고 여겨질 경우에 있어서, 환적증명서나 선화증권 등의 대체 서류로 보완하거나 아니면 원산지증명서의 입수 경로를 추적하여 확인하는 등 북한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확인을 위한 판정 기준이

아직 미흡한 상태이므로, 이 기준의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남북한 교역을 내국간 거래로 인정함에 있어서 새로운 문제 제기가 발생할 수 있다. 즉, 남북한 교역은 WTO의 최혜국 대우 원칙에 위배되므로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WTO 회원국에게도 동일한 혜택(비관세 조치)을 부여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이다. 이에 관한 문제 제기는 아직 남북한 교역이 크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시 되지 않고 있지만, 향후 남북한 교역량이 팽창된다면 틀림없이 제기될 소지가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향후 문제 제기에 대비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러한 내국간 거래 인정에 따른 문제 제기를 해소시키는 방법으로서 첫째, 북한을 WTO 회원국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으나, 이것은 현실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 상품에 대한 특별한 혜택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둘째, 북한을 WTO 비회원국 상태로 놔둔 상태에서의 해결 방법으로는 WTO 의무 면제(Waiver) 승인 획득 방법과 북한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전자의 방법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WTO 회원국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실현성이 극히 적다. 그러나 후자의 방법은 비관세 조치를 합법화할 수 있으며 또한

남북합의서에서도 직접 교역을 합의한 상태이므로, 남북한 당사자간에 자유무역협정만 체결한다면 실현 가능한 방법이며 또한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과제이다.

또한 남북한 교역을 내국간 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남북한 관계를 구체화시킨 각종의 제도적 장치(무역협정, 청산협정, 호혜통상협정 등)를 마련하여, 이것을 근거로 하여 WTO 등의 국제 기구에 대하여 통상 외교 노력을 경주하고(이때 이러한 노력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것임) WTO에서의 의무 면제(Waiver)도 실현시켜야 한다.

바터 거래 방식의 효율적 활용과 개선

이 방식은 바터 거래 방식의 장점때문에 현재 북한이 가장 선호하고 있으나, 남한 상사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방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호 반출입 가능 품목의 개발 노력을 통하여 대응 구매 방식으로 진전시키도록 하고, 품질 하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적출지에서 상대방측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함과 동시에, 판문점 등에 상설 교역장을 설치하여 이곳을 물품 교환 장소로 이용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교역량 확대를 위하여 남한이 반출 금액 범위 내에서 반입 품목과 반입 물량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도록 한다. 즉, 현재는 반입 품목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출입 공고를 적용하되 우표, 화폐, 유해 물품 등 상당수 품목을 제한 승인 품목으로 지정하여, 이 제한 승인 품목에 대해서는 통일원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반입량에 있어서도 국내 수급량을 고려하여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 교역 확대를 위하여 반입 제한 품목을 과감하게 완화함과 동시에, 북한의 주종 수출품인 1차 상품의 반입 물량에 대해서는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당해 품목의 전년도 우리나라 총수입 실적을 감안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제한없이 반입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로써 반입 품목과 반입량을 제한함으로써 바터 거래의 성격상 반출 금액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물론, 이때 1차 상품의 대량 반입으로 말미암아 국내 동종 생산 업자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 남북교류협력기금이나 농산물의 경우 UR 농산물 개방을 대비하여 설정해놓은 농민특별자금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대응 구매 방식의 활용

물물 교환 방식인 바터 거래시에는 남북한 물품이 동시에 이동되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 대응 구매(counter purchase) 방식을 이용하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즉, 이 방식은 반출 계약과 반입 계약이 별도로 이루어지며 반출 시기와 반입 시기를 달리할 수가 있으므로 바터 방식보다는 개선된 방식이다. 또한 별도의 두 개의 계약서는 의정서(protocol: 국가간에 합의된 각서)를 통하여 상호 연결될 수 있으며, 환급 보증이 보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방식은 별도의 두 개의 거래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보장(의정서) 하에서 이루어진다. 이에 따른 별도의 대금 결제로 말미암은 환거래의 발생으로 북한에게는 불리한 방식이 될 수 있다. 이때 대응 구매의 보장을 위해서 동시개설신용장(Back-to-back L/C), 기탁신용장(Escrow L/C), 토마스신용장(Thomas L/C) 등의 특수 신용장 개설이 요구된다. 이것도 역시 북한에게는 불리한 방식이 될 수 있다. 또한 대응 구매를 반드시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때 대응 물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남한에게는 불리한 측면이 된다.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대금 결제가 별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거래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남북한 거래에서는 의정서에서 신용장 등의 환거래가 필요없이 일정한 시기에 대응 구매한다는 보장만 하고 이행하도록 하면 된다.

또한 비록 특수 신용장 개설을 통하여 대금 결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매입 은행, 개설 은행, 지급 은행 혹은 제3국의 환거래 은행

등에 특수 계정을 설치하여 상계 처리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대응 구매 물품이 제한적이라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반출입 가능 품목의 개발을 남북한이 상호 노력하면 된다. 이것을 위해서는 남북한 교역 당사자간에 직접 상담과 개발을 위해서 관문점에 상설 교역 전시장을 설치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북한의 일본 등 서방 국가 및 중국, 러시아, 동구권 등 구공산권 국가들과의 교역 품목 분석을 통하여 對남한 전환 가능 품목을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

신용장 결제 방식의 활용

이 방식은 전세계적으로 널리 이용되는 방식으로서 반출업자의 대금 회수 상의 불안과 반입업자의 계약 물품의 적기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남한 무역상사의 경우에는 이 신용장 방식의 거래가 보편화되어 있고, 또한 신용장을 통하여 금융 편의도 기대할 수가 있다. 제3국의 중개상을 통하는 경우 실질적으로는 남북한 거래이지만 형식적으로만 제3국을 이용하는 것이므로(북한의 사정때문에), 거래 상의 하자가 발생하면 중개상에게 하자의 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신용장 상에는 대금 결제 통화가 지정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외화 부족의 상태에 있는 북한에게는 대단히 불리한 입장이

되어 성사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비록 신용장 방식을 따르더라도 신용장 개설 은행(무역은행, 대성은행, 금강은행 등)의 신용 상에 문제가 많으며, 그래서 확인 은행의 설정이 요구되는데 확인 은행이 되어줄 만한 은행을 찾기도 쉽지가 않다.

하지만, 구상 무역 때 흔히 사용되는 동시 개설신용장, 기탁신용장, 토마스신용장 등의 특수 신용장을 활용하면 일반 신용장보다는 문제점이 적게 된다. 즉, 양측 외환은행, 예를 들어서 북한의 대성은행과 남한의 한국수출입은행간에 환거래 체결 계약(corres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결제에서 특수 신용장을 이용하면 북한의 외화 사정 하에서의 문제점인 결제 능력 문제와는 관계가 없으며, 북한의 입장에서는 향후 서방 국가와의 교류에 필수적인 외환 거래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청산 계정의 활용

청산 계정을 이용해 대금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간접 교역을 직접 교역으로 전환시켜야 하는데, 남북합의서에서는 직접 교역의 추진에 대해서 이미 합의된 바 있으며, 남북합의서에 따른 부속서에서는 청산 결제 방식의 추진에 대해서 이미 합의된 바 있다. 다만, 이의 실천을 위한 세부적 사항 즉 청산은행(결제 은행), 청산 통화(결제 통화), 청

산 단위(결제 단위), 청산 가격(결제 가격), 청산 잔액 처리 방법(결제 방법) 등의 세부적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된 바 없다. 따라서 남북한 교역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합의서와 부속서에 합의된 바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적 사항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내야 한다. 세부적 사항 가운데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결제 통화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견 노출이 예상된다. 이러한 결제 통화 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요구된다.

첫째, 남북한 교역시 처음부터 반출입 가격을 미국 달러화로 하고 청산도 미국 달러화로 결제하는 방법이다. 이 방식을 북한이 거절하면 남북한 교역 활성화를 위해서 북한의 요구대로 잠정적 조치로서 스위스 프랑화 등으로 결제하도록 한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미국 달러화에 링크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달러화 이외의 다른 통화는 환차 손실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것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국내 기업들에게 남북협력기금 가운데 손실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적당할 시기에 가서는 미국 달러화로 전환시키도록 하는 융통성을 발휘하도록 한다.

둘째, 결제 통화를 처음부터 제3의 통화(예: SDR)로 하든지 아니면 구 동서독처럼 새로운 통화(구 동서독: VE)를 창출하여 반출입 가격과 청산도 이 통화로 한다.

남북한 직접 교역시 청산 결제 이용은 초

기에만 실시하고, 직접 교역의 관행이 정착화되고 북한의 개혁과 개방 추이에 따라 환거래 방식도 병행하며, 청산 계정의 적용은 불가피한 최소의 품목에만 적용시키며, 엄격한 협정 무역 방식보다는 교역 수량과 금액에 탄력성을 부여한다.

구 동서독의 스윙제도의 활용

청산협정에 의한 거래 방식의 문제점 특히 청산 잔액 처리 문제와 결제 통화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서 과거 구 동서독간에 시행되었던 것이 스윙제도(Swing, 무이자신용공여제도)이다. 즉, 이 방식은 일정 기간 반출입이 진행된 후 차액을 어떤 국제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금융협정을 체결하여, 이것을 통하여 신용공여제도를 도입하여 일정 기간(1년, 2년 등) 무이자로 그 차액을 대여하는 형식으로 연기시켜 주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 거래에서도 청산 계정에 따라 교역이 이루어질 경우, 남한의 2차 상품 공급, 북한의 1차 상품 공급으로 남한의 공급액이 북한의 공급액을 훨씬 초과하는 결과가 예상되는데, 이에 따라서 남북한 교역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남북한 교역의 활성화를 위한 청산 계정 활용시 청산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 자동 대출을 인정하는 무이자대월제도의 운영이 요구되며,

이의 자금은 남북한경제협력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통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스윙제도와 남북협력기금 등은 통일 비용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이러한 스윙제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민족 통일의 결실을 맺는 구 동서독이 스윙제도를 어떻게 활용하여 민족 통일의 중대한 밑거름이 되었는가를 분석함으로써, 거기서 남북한에 적용시킬 수 있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무환 수위탁 가공 무역 방식의 활용

이 방식(무환으로 원자재를 반출하고, 무환으로 완제품을 반입)은 수탁자의 운전 자금 부담이 없고 가공 제품의 해외 시장 판로가 확실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 초기 단계에 있는 나라들의 대외 무역 확대에 매우 유리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우리 남한도 1962년 경제개발 5개년계획 때부터 가공 무역 방식 가운데서 무환 가공 무역 방식의 효과를 많이 얻었던 경험이 있다. 따라서 남북한 교역에서 무환 수위탁 가공 무역 방식은 북한의 경제 발전에 대단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무환(외상)의 형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완제품 반입 상의 위험을 커버하기 위하여 청산 계정을 기술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

즉, 청산 계정의 적용에 있어서 구 동서독의 경우와 같이(구 동서독 스윙 구좌에 special 'S' account를 설치했음) 청산 계정에 특수 계정을 설치하여, 기존의 상품 교역 계정에 포함시켜 기말 대차상계 때 기술적으로 처리하는 청산 계정의 탄력적 운용을 시도할 수 있다.

남한의 입장에서는 현재 임가공 방식의 활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임가공 방식의 이용이 초보 단계인 현 시점에서 무환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북한의 생산 기술 수준을 파악할 수 있고, 남북한 경제 협력이 본격화될 경우 곧바로 경제 협력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파트너를 미리부터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방식에 의한 협력이 요구된다.

이 방식을 농산물의 위탁 재배에도 활용한다면 현재 남한의 생산량이 극히 부족하여 거의 전량을 중국 등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한약재, 쌀, 메밀, 녹두, 참깨, 울무 등을 북한에서 재배하게 하고, 재배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공임 형식으로 지불하여 반입한다면 상호 매우 유리한 방식이 될 수 있다.

북한의 생산 공장에 원부자재를 공급하고 완제품을 반입하는 순수한 의미의 무환 수위탁 가공 무역을 더욱 발전시켜, 일본 등의 경우처럼 북한에 생산 설비를 제공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무환 수위탁 가공 무역 즉 북한의 합영 기업과 합작 기업의 설립을 통한 산업

협력 방식에 의한 무환 수위탁 가공 무역을 실시한다면 효과적인 것이다.

물론, 북한의 기존의 합영 기업이나 신규 합영 기업 설립을 통한 무환 수위탁 가공 무역의 경우는 중앙 통제적 계획경제체제 하에서의 집중적인 정부 통제로 말미암아 기업 경영과 생산 분야에서의 자율성이 낮은 상태여서 투자 위험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일본의 조총련계 기업들도 초기에는 합영 기업으로 시작하다가 지금은 합작 기업으로 전환시키고 있기 때문에, 합영 기업을 통한 무환 수위탁 가공 무역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합작 기업이나 신규 합작 기업 설립을 통한 무환 수위탁 가공 무역은 성공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합영 기업이나 합작 기업은 양측이 공동 출자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전자는 경영 참여를 하게 되지만 후자는 경영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이러한 합영 기업과 합작 기업에서 무환 수위탁 가공 무역을 할 경우 양자간에 가공임의 지불 방식이 상이하다. 가공임에 대한 결제 방식에서 전자는 합영 기업과 투자 기업간에 일반 수위탁 가공 무역과 동일하게 가공임을 결제하지만, 후자는 가공임이 생산 설비가액으로 대체되거나 합작 제품으로 상환하고 이윤도 분배되어 의미상으로 볼 때 제품 환매 거래(product buy-back)가 된다.

제품 환매 거래의 활용

독일은 북한에 섬유 기계를 공급하고 이에 의하여 의류 등 제품을 생산한 후 반입하여 판매하는 방식을 채택한 경험도 있으며, 남한은 1990년 12월 29일 코오롱상사가 양말 제조기(150 대, 2,188만 달러)와 양말 원부자재를 북한 평양조선방직에 반출하고 대금 결제는 이 기계로 제조된 양말로 상환하기로 한 바 있는데, 결국 무환 수위탁 가공 무역과 제품 환매 거래 방식이 이루어진 셈이다.

남북한은 비교 우위에 입각한 장기적인 산업 구조 조정 차원에서 북한의 산업 연관 효과가 큰 분야를 선정하여, 남북 통일을 대비한 분업체제를 설정하기 위하여 제품 환매 거래를 신중하게 행해야 하며, 이것을 위해서 북한의 산업 구조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요구된다. 또한 산업 협력 차원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본 등 기존의 합영 회사와 합작 회사들의 사업 활동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현재 유망한 분야로서 신발, 섬유, 운송 수단, 조선, 수산물 가공 분야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북한과의 제품 환매 거래 방식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은 기존의 합작 기업을 활용하고, 점차 나진·선봉자유경제지대 내에 신규 합작 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제품 환매 거래 방식에서의 대금 결제는 우선은 북한이 가장 선호하는 생산 제품이나 가공임으로 하되, 그 이외에도 환거래 방식, 즉 기계 설비 대금 결제와 제품 반입 대금 결제를 별도로 추진하는 방법도 모색될 수 있으며, 또한 장기적 청산 결제 방식도 모색되어야 한다.

중장기연불제도의 활용

현재 세계 각국 특히 선진국에서는 조선, 기계 설비, 플랜트 등 거래 규모가 큰 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종의 외상 수출인 중장기 연불제도를 정부 재정 자금으로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1967년 7월 한국수출입은행법 제정으로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다. 또한 이에 따른 대금 회수의 위험을 커버하기 위하여 수출보험 내에 중장기 수출보험을 정책보험으로 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 취급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남북한의 산업 구조상 남한 물품이 북한으로 반출될 경우 현재 상태로서는 공산품 등 2차 상품이 주종을 이룰 수밖에 없으며, 현실적으로 북한이 그동안 일본·중국·러시아로부터 수입해오던 기계 설비, 수송 기기, 자동차 등 물품을 남한이 충분히 공급할 능력이 있으나, 이들 제품은 상대적으로 거래 규모가 큰 편이어서 북한의 입장에서서는 외화 부족으로 말미암아 일시에 지급할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이러한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고 남북한 교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수급 상으로 볼 때, 북한으로의 반출이 가능한 품목을 선정하여 반출시 국내 업체에게 중장기 저리 자금을 지원하거나, 또는 대금 결제는 중장기연불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미회수 대금과 제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중장기 수출보험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맺음말

최근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비추어보면, 우리 한(배달)민족의 장래는 결국 우리 한(배달)민족 스스로만이 헤쳐나갈 수밖에 없게끔 전개돼가고 있다. 즉, 우리 한반도에 관한 모든 일은 이제 어느 국가·어느 민족에게도 맡기거나 의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돼가고 있음을 직시할 수 있다.

게다가 한반도의 주변 강대국인 일본과 중국은 유럽(EU)·미주(NAFTA)와 더불어서 21세기 세계 경제 질서를 3분, 4분할 목적으로 중국은 大中華經濟圈을 일본은 大東亞共榮圈을 꿈꾸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세계 전체가 그리고 한반도 남북한이 속해 있는 극동아시아가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한반도는 자칫 잘못하면, 중국과 일본에 종속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은 배달민족으로서 한반도의 장래에 대해서 합심해서 대처해나가지 않으면 안될 운명에 놓여 있는 것이다.

특히, 현재 북한 동포들이 겪고 있는 식량난의 해결과 북한 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는 민족적 차원에서 그 해결 방안을 시급히 제시해야 할 의무를 안고 있다.

북한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단기적인 방안보다는 장기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는 달리 하나의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다.

다른 민족들은 당장 먹을 쌀을 생색내며(?) 제공하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과는 달리 당장 먹을 쌀도 제공하면서 동시에 북한 스스로가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쌀 생산성 향상 기법) 등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 의식 하에서 눈자는 앞에서 남북한 교역의 확대를 위하여 열 가지의 효율적인 대금 결제 방식을 제한해보았다.

결국, 우리 남북한은 한민족 경제권의 차원에서 남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운명에 놓여 있음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현명한 대처를 해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㉞

참고 문헌

- 대한무역진흥공사(1992. 3), 「북한의 대외 무역 동향」, 무공 자료 92-10.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1993. 9), 「남북한 경제 교류의 과제와 대응 방안」.
- 배종열(1997. 8), “남북 경제 교류 현황에 대한 평가 및 전망”, 「수은조사월보」.
- 윤기관(1995), “북한의 대외 개방화와 남북한 경제 협력의 전망”, 「한국통일연구」, 제1권 제1호,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 (1995), “남북한 경제 협력과 한(배달)민족경제권”, 「통일문제연구」, 제7권 제2호, 평화문제연구소.
- (1995), “남북한 대금 결제 방식의 새로운 모색”, 「경영논집」, 제XI 권 제1호,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 (1995), “북한의 대외 경제 정책 변화와 대외 무역 추이”, 「한국통일연구」, 제2권 제1호,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 통일원(1974. 7), 「북한의 대 자유권 일본, 서구 제국 교역 방식」.
- ,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각년 각호.
- (1977), 「북한 무역 현황과 대외 결제 방법」.
- 한국무역협회(1994. 7), 「남북 교역 실무 길잡이」, 진흥 94-23.